



제314회 임시회
2012.09.18(화)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2년 8월 31일
- 회부일자 : 2012년 9월 4일

3. 제안이유

-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이 폐지되고, 산업체 특별학급의 설립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초·중등교육
법」 제52조제4항에 의거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
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설치 목적 및 적용범
위(안 제1조, 제2조)
- 나. 산업체의 구분 및 협조(안 제3조, 제4조)
- 다. 산업체 특별학급의 설치 및 부설 고등학교의 설립(안 제5조, 제6
조)

라. 산업체 특별학급의 설치 및 부설 고등학교의 설립 인가절차, 학과 및 교육과정, 입학방법, 경비부담, 수업료 등의 면제, 산업체의 폐업 또는 퇴직으로 인한 경우의 경비부담 등, 경비의 납부 및 집행 잔액의 사용, 교직원, 수당지급, 교육용 시설 기준 등(안 제7조~제16조)

5. 검토의견

-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이 폐지되고, 산업체 특별학급의 설립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충청북도의 조례안 의견에 대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근로청소년이 다니는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로 특별히 지원을 한다하여도 형평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령 발 체

□ 초 · 중등교육법

[시행 2012.3.21] [법률 제11384호, 2012.3.21, 일부개정]

제48조(학과 등) ① 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등) ①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②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체는 당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③2 이상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의 합계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으로 하나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신설 2005.3.2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설립기준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3.24>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산업체의 경영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⑥지방자치단체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비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2.4.20] [대통령령 제23746호, 2012.4.20, 일부개정]

제43조(교과)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3.1.29, 2008.2.29>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3.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과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시행 2011.2.9]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3호, 2011.2.9, 타법개정]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①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설립계획서를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0>

1. 학교의 종별·명칭·위치·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지확보계획
3. 교사건축계획
4. 소요경비조달계획
5. 설립자의 이력(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이력)과 재산명세 및 재산확보 계획

②제1항제1호의 개교예정일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이내이어야 한다.

③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를, 이미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로서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제1항의 학교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법인 설립허가등의 통보) 시·도교육감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여부를 제출 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 등의 확보와 인가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주요구조부의 공사가 완료된 후 신청하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조(유치원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을 말한다)에 규정된 사항 및 인가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을 기재한 학교설립인가신청서에 연도별 교육시설·설비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개교예정일 6월이전까지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0>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한까지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시·도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기간이 경과하여도 학교의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1.20>

제5조(학교설립인가의 통보등) ① 시·도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3월이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